□ 2학기 전형별 모집인원(명)

학 과	총계	신입학 정원외 특별전형					편입
		소계	산업체 위탁	군위탁	사회적 배려자	특수교육	일반
청소년복지상담학과	57	57	19	31	5	2	-
다문화보육복지학과	21	21	14	_	4	3	-
아동복지학과	13	12	5	-	4	3	1
복지경영학과	17	15	2	9	3	1	2
생활환경복지학과	7	7	_	4	1	2	-
경찰행정복지학과	30	30	_	30	_	-	-
군사회복지학과	25	25	_	25	_	-	-
심리상담치료학과	32	32	16	14	_	2	_
독도학과	20	18	1	14	3	-	2
총 계	222	217	57	127	20	13	5

□ 정원 외 특별전형 지원자격

전 형 명	지 원 자 격				
산업체 위탁 전형	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015학년도 개시일 전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산업체에 재직 중이며 소속 산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· 4대보험 가입 산업체 · 의료기관 ·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 및 비영리법인 · 방송·신문사 등 언론기관 ·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(사설강습소 포함)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· 사업주를 포함하여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· 산업체 등이 구성원인 단체				
군 위탁 전형	· 군위탁생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기복무 현역군인(사관생도 포함) ·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현역군인으로서 국방부의 추천을 받아 교육 부에서 추천한 자				
사회적배려자 전형 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	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초.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동등 여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수급권자 및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로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전(각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) ※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'한부모가족증명서' 제출이 가능한 자				
특수교육 대상자 전형(장애인)	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동등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 ·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· 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(국가 보훈처 등급) 등록자로서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상응하는 자 ·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및 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교육 대상자로 진단·평가된 자				